

『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여비규정」 일부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의 지급기준, 지급대상,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 상시출장여비 지급(안 제2조)
 -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 : 월액여비 전액
 - 출장일수 월 15일 미만 :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
- 여비의 지급구분(안 제3조)
 - 시 장 :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라목 적용
 - 시장 이외 공무원 :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를 적용
- 운임 및 숙박비 지급(안 제4조)
 - 별표1 기준에 의하여 지급
-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(안 제5조)
 -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(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)는 준용하지 아니함

4. 참고사항

- 「공무원여비규정」
-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(경상북도 회계과-4401 <2008. 4.8>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이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(제20741호)으로 개정되었으나 공무원여비정산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
-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안 제2조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시출장여비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
-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여비를 시장과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구분 지급토록 규정하였고,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시 운임과 숙박비의 기준을 정하였으며, 기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타법에 저촉사항 없음